[서식 예]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(대중음식점)



행 정 심 판 청 구					
청 구 인	성 명	0 0 0 (0 0 0)	주민등록번호	111111-1111111	
	주 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				
선정대표자·관리인 또는 대리인	대리인 변호사 〇 〇				
피 청 구 인	△△특별시 △△구청장 재 결 청 서울특별시장				
청구대상인 처분 내용(부작위의 전 제가 되는 신청내 용·일자					
처분이있음을 안날	2000.0.0				
심판청구취지·이유	(별지와 같음)				
처분청의 고지유무	ĥ		고지내용	통 지	
증거서류(증거물)	통지서, 허가증, 진술서, 확인서, 관보				
근거법조	행정심판법 제19조, 동법시행령 제18조				

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

2000년 0월 0일

청구 대리인 변호사 ○ ○ (인)

△△시 △△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 : 청구서부본, 위 각 증거서류 각 1통



청 구 취 지

피청구인이 20○. ○. 정구인에 대하여 한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 대중음식점 ☆☆에 관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.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청구인이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에서「☆☆」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던 중,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○. ○. ○. 00:00부터 00:30경 까지 위식당에서 시간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○○. ○. ○.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○. ○부터 ○. ○까지 2개월 간 위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.

2. 이 사건처분의 위법사항

- 1) 청구인은 19○○. ○. ○.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에서 40평 실내규모의 방5개와 홀을 만들어 ☆☆ 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(일식)을 영업해 왔습니다.
- 2) 소외 김□□외 2명은 20○○. ○. ○. 21:00 경부터 홀에 들어와 식사를 하던 중 영업주는 위 손님들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부탁하고 손님들이 아직 이야기 안 끝났으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일부 반찬은 테이블에 남은 상태에서 홀 안의 집기정리 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 00:30분경 단속반이 갑자기들어와서 청구인은 영업시간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영업시간위반으로 인정한 이 사건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. 당시 위 업소에는 위 소외인들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.
- 3) 또한 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
- 4) 위 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

	♠ N 대한법률구조공단	
4	/ //	and delayer
- c.or.kr#		

제출기관	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 위원회(행정심판법 23조)	청구기간	・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(호		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		
제출부수	청구서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행정심판법		
불복방법	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(행정심판법 51조)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. 다만,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(행정소송법 19조, 38조)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,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(행정소송법 18조) 				